

'인권보도준칙'을 중심으로 한 보도비평

- 인사말 : 윤 여 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사회 : 최 경 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발 제 : 김 은 희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정진호·임지수·강은 (언론인권센터 모니터팀)

- 토론 : 김 동 원 (한국예술종합대학 외래교수)
김 동 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김 범 준 (KBS 사회부 기자)
남 상 호 (MBC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
변 수 현 (난민네트워크 활동가)
정 의 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 주 최 : (사)언론인권센터
- 후 원 : 방송문화진흥회

목 차

발제 : , 인권옹호자로서의 사명을 기대하며 은 희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3
모니터 결과 발제1 : 여성도 같은 시민이고 싶다 정 진 호 (언론인권센터 모니터요원)	9
모니터 결과 발제2 : CCTV 영상 보도의 경계는 어디? 임 지 수 (언론인권센터 모니터요원)	14
모니터 결과 발제3 : 노인보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강 은 (언론인권센터 모니터요원)	20
참고자료 모니터 보고서	27

, 인권옹호자로서의 사명을 기대하며

김 은 희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들어가며

인권의 주제로 생각나는 상반되는 두 개의 사안이 있다.

하나는 1990년 중반인데, 한 여자대학에서 자신들의 학교 학칙상의 결혼퇴교제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학술제가 열렸고, 다음날 한 일간지가 이를 “시집 못가 안달 난 00 여대생들”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다룬 일이 있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기가 찰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언론사는 학생들의 항의에 미동도 없었다.

다른 하나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했던 한센인 인권 개선 사업에서의 언론의 역할이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사업팀은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구조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함께 할 주요 파트너로 언론을 1차적으로 꼽았다. 당시 언론은 행사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보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센인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함께 읽고 말해내는 역할을 수행했고, 그 결과 이후 우리 사회는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식시키는 큰 전환 포인트를 형성할 수 있었다. 더 이상 공공 용어나 언론에서 ‘나병’이나 ‘문둥병’이라는 용어는 접할 수 없게 되었고, 한센병은 전염력이 거의 없는 병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 언론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천부의 모두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외쳐야만 한

. 그리고 그 외침의 목소리를 찾아내어 울리게 하고 그 메아리가 사회 안에서 쉼없이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즉 언론은 인권수호의 책무자로서의 소명을 본질적으로 견지한다.

즉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 등 인권보장의 책무자가 인권의 수호와 증진이라는 본래의 소명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요구할 수 있기 위하여 존재하고 필요한 것이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다. 이렇게 언론은 민주주의라는 인권보장에 가장 적합하다는 정치체계가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엔진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이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전문의 내용이다. 언론의 본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도 빠짐없이 적어낸 언론 스스로의 확인과 약속의 문구일 것이다. 한편, 이 준칙이 현재 우리사회 언론 활동에 있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책무의 엄중함 만큼의 평가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번 언론인권센터의 ‘인권보도준칙을 중심으로 한 보도비평’과정은 반갑고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발판으로 향후 언론이 그 인권책무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사회 인권을 지켜내고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언론의 모습들이 잘 자리잡아 나가길 기대해 본다.

2. 알권리, 선정성이 아닌 공익성을 원한다

앞에 제시된 인권보도준칙 전문을 잘 살펴보면,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고 하여 언론이 견지해야 할 공익적 역할의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언론이 지양해야 할 인권침해적 태도에 대한 주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 글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공익성’이라 하고 후자의 경계를 넘은 것을 ‘선정성’의 이라고 용어를 정리하겠다).

언론이 공익성과 선정성 두 영역의 경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두 영역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경계가 필요하다는 긴장감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공익성의 경계를 넘어 선정성으로 넘어갈 경우, 일차적으로는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 즉 언론 보도로 인권침해가 유발된 것인데, 이 경우 언론은 대부분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꺼내든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취재와 보도의 의무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¹⁾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언론 본래 사명의 수행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려는 집이 이혼한 사람의 집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원인으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기재가 필요하다는 알권리는 우리가 보장하여야 할 알권리라고 할 수 있는가? 필자는 이러한 경우 이 권리는 진짜 인권이 아닌 ‘가짜 인권’이라고 이야기해 왔다. 사람에게 대한 부당한 편견을 발로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언론에 직접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권의 충돌이라는 프레임의 함정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물론 진정하게 알권리와 보도 당사자의 인권이 갈등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도할수록 진정한 인권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알권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내뱉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더구나 많은 경우 사회 구조적 왜곡과 편견이 개입된 알권리를 방패로 하는 경우는 아닌지에 대한 긴장감이 항상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언론이 진정으로 대중과 호흡해야 하는 이야기들은 무엇인지며, 어떻게 이야기해낼 것인지에 대한 언론 스스로의 끊임없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3. 존엄을 읽어내고 말하는 눈과 입, 언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존엄하다. 이는 양차 대전 및 집단 학살 등의 비극을 경험한 인류

1) 이 글에서는 소위 ‘공인’에 대한 보도의 문제에 대한 정치한 논의는 접어두고, 공인 이외의 이들의 문제로 국한한다. 물론 공인인지의 경계에 대하여도 별도의 심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만든 약속인 세계인권선언문의 전문에서 “인류 구성원은 모두는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라고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인간은 그가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그 존엄의 내용이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천부의 존엄을 지켜내는 인권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흔히 꺼내는 카드가 바로 ‘사회적 합의’이다. 여기에서는 인권이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심각성은 차지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여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을 이야기하고자 한다.²⁾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적 논쟁들을 들여다보자. 최근 뜨겁게 달궈진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성소수자 인권, 미투, 난민과 이주민, 장애인 이동권과 특수학교 설립 등 많은 의제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사안 안에서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해야 할 국가나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은 여론을 이유로 인권보장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여론’이라고 칭해지는 경향성의 안을 들여다보자. 대중들이 가지는 의견의 경향성이 여론인데, 우리 사회의 대중들은 인권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일까? 제주도 예멘 난민의 문제가 대표적일 수 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들의 존엄의 상황에 대한 보도는 쉽게 접할 수 없었다. 그들이 그 망망대해를 건너오는 배 안에서 어린 자녀를 잃고도 주검을 버리도록 강요받지 않기 위해, 그 죽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울음조차 낼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는 다만 난민 그들의 존엄만을 알자는 이야기를 넘어선다. 인간의 존엄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알려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의 존엄도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인류 공동체의 존엄을 지켜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 안에서 살고 있고, ‘먹고사니즘’에 고달플수록 그 수동성은 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언론이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관점으로 제시하는가는 상점에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진열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언론은 제시하는 정보에 대한 취사와 비판은 대중의 몫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맞닥뜨리는 사건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읽어내고 대중에게 끊임없이 인권의 말을 거는 언론이 필요하다. 언론이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언론은 자칫 유익이 아닌 유해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존엄의 시각이 탑재되지 못한 언론은 어떠한 모습이고, 그래서 대중에게,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언론의 인권역량 강화 필요성 강조에 지

2) 사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여론이 허락되지 않아서 인권적 제도의 추진이 어렵다는 주장은 인권보장의 책무자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와 더불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여론이란 것의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4. , 공익성을 지켜내며 인권옹호자로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인권의 문제는 개인의 상호배려와 존중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물론 사회 구조 안의 인권적으로 왜곡, 결핍된 구조를 읽어내고 개선하기 위하여 그 출발이 구성원들의 상호 배려와 존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권의 보장의 궁극적인 현실 책무의 단위가 국가와 지방정부이고, 이는 인권의 문제는 결국 제도와 정책의 틀 안에서의 인권적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그 지속성과 확산성이 담보할 수 있다. 이 구조를 들여다보고 말하는 눈과 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미담을 인권의 보장의 궁극적인 해결이 된 것처럼 비추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것은 우리가 인성교육이 가지는 한계와 위험성에 긴장하는 이유와도 같다. 즉 국가와 제도가 존재하는데 왜 우리는 개인의 희생으로만 인권의 결핍을 채우는 구조에 놓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읽어내고 말해내는 언론의 역량이 필요하다.

관련해서는 지난해 여름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던 근로기준법 제53조 특례조항 개정의 문제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이 논의는 고속도로에서의 대형 사고를 취재한 언론의 눈과 입에 의하여 그 출발이 가능했다고 본다. 언론은 왜 운전사가 사고를 냈는지를 취재했고, 운전사가 5시간씩 자면서 계속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언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건을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존엄하지 않은 노동환경이 가능한지 사회 구조적 원인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 1961년 국가재건회의에서 만들었던 초과근무제한에 대한 특례조항이 원인의 원인이었음을 알아냈고, 대중에게 이를 알려 냈다. 결국 많이 이들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권을 위협함을 공감하였고,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올해 초 결국 이 조항은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사회구조를 읽어내고 말해내는 역할을 언론보다 잘 해낼 수 있는 사회 단위가 있을까?

5. 언론, 우리 사회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힘

언론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인권적 책무가 이렇게 막중한 만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은 간

않을 것이다.

지금도 뉴스를 보다가 흔히 마주치는 장애극복 패러다임이나, 인권보장의 책무를 개인의 몫으로 지우기 쉬운 스토리의 미담화, 도를 넘는 피의사실 보도, 이주민 등에 대한 대상화적 시각, 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전제에서 전개되는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과 교권 충돌 패러다임, 성소수자 인권 관련 사안의 정확한 보도 부족 등 세세하게 챙겨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산적한 문제들을 자신의 책무에 충실하게 마주하고 이행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언론 내외부적으로 모두 필요할 것이다. 언론 내부적으로는 인권교육도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모니터링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토론회도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인권의 과정은 결핍의 충족을 통한 역량의 강화이어야 한다. 즉 이번 토론회의 노력과 이야기들은 다만 언론을 질타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결핍구조로 인해 언론이 본래의 소명을 다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과정의 한 걸음일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들을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가지는 인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언론의 인권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여성도 같은 시민이고 싶다

정진호 (언론인권센터 모니터요원)

그때 그 시절의 어머니처럼..

오늘 언론인권센터는 방안에 불쑥 들어온 어머니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침대 밑 보이지 않는 먼지를 끄집어내서 뭐라 하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의 어머니처럼 “다 약이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이니 들어라.”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별걸 다 가지고 시비거네.” 또는 “아는 데 현실적으로 맘처럼 그렇게 안 된다.” 라고 하는 딸 아들이 되지 말길 바란다. 모두 가족처럼 언론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 아니겠는가.

1.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평등한가?

박근혜 탄핵정국 때 언론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만큼 언론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 기자가 가장 위대했을 때와 가장 초라했을 때의 핵심은 ‘얼마만큼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 가?’ 였다. 자식을 잃은 희생자 부모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심정이 어떠냐고 물어 소위 ‘기레기’ 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도, 부당한 권력 앞에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냐?’ 라고 물었던 것들도 모두 감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만큼의 감수성이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작용했는지 물어본다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10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혜화역 거리에 나와 외친 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국가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언론이 여성들에게 가한 폭력에 대한 울음이었다. 생물학적 남성기자는 폴리스라인 밖 취재만 가능하게 한 것에 분노했다면 그

분노의 방향은 여성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분노하지 못한 나에게 향했어야 한다. 혹시 기자가 언론의 기능과 보도에만 신경을 쓰고 보도 대상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진 않았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며 보도를 했는지 성찰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적극 받아드린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했는가? 그리고 언론은 이를 위해 여성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섰는가? 혹시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에 의한 관념들을 재생산하진 않았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순 없을 것 같다. 이번 발제에서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언론이 어떻게 여성을 다뤄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그러면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2. 언론은 어떻게 여성을 다뤄왔는가?

한국 뉴스보도가 여성을 다룰 때 드러나는 특징은 **가부장 또는 남성 중심적 가치에 입각해 여성을 피해자, 주변자, 소수자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뉴스보도가 여성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남성 중심적 가치에 입각해 실제 중요성에 비해 그 의미를 낮춰 보도하고** 둘째, **여성이라는 성별을 강조시킨 피상적인 단순 화제거리로 보도하거나** 셋째,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식의 보도**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주체로 등장하는 뉴스는 주로 가족, 육아, 홈메이킹, 교육 보건 등과 관련된 스토리가 많다. 언론매체가 형성한 여성의 이미지의 틀 안에서 여성성이 강조되는 역할을 도맡아 하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 경제 등의 주체가 여성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여성의 정치사회적 성공이나 경성 이슈와 관련해 여성을 다룬 경우에도 언론은 그 성과에 주목하기보다는 여성성을 부각시켜 성별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한다.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심층 보도가 아닌, 여성이라는 성별을 강조시킨 피상적인 단순 화제성 보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첫째, 남성 중심적 가치에 입각해 실제 중요성에 비해 그 의미를 낮춘 보도

차별의 문제임에도 가치관 차이인 것처럼 다뤄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비중과 의미를 낮춰 보도했다. 또한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젠더 불평등에 따른 차별에 대해 보도하지 않아 한국의 사회적 문제나 구조적 배경을 숨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지 못하게 했다.

JTBC 권근영 기자	촬영 전부터 '악플·평점 전쟁'...영화 '82년생 김지영'
<p>JTBC의 보도는 여성인권적 측면에서 2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직업 앞에 성별을 붙이는 보도행위 둘째,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가치관의 차이로 보도한 행위다. ……(이하 중략)</p> <p>언론에서 여검사, 여의사, 여배우 등 특정직업 앞에 성별을 붙이는 일은 흔하다. 특히 전문직에 있어 여성이라는 성을 강조하는 행위는 더욱 많다. 이러한 보도는 특정직업을 특정성에 한정하는 관념들을 강화시키고 특정직업을 갖은 사람을 성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하 중략)</p> <p>또한 위 보도에 나와 있는 “여배우를 비난하는 댓글과 응원하는 댓글이 엇갈려 남·여간성 대결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보도는 이 문제를 혐오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보도는 젠더 불평등에 따른 권력관계로 인해 배우의 작품선택을 제한하는 주장을 가치관의 차이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이하 생략)</p>	

MBC 이준희 기자	“번식계획 없냐”... 교감이 교사들에게 언어폭력
<p>본 리포트의 헤드라인은 <“번식계획 없냐”.. 교감이 교사들에게 언어폭력>이다. ‘몸매’ ‘다리’ ‘공장문’(여성의 생식기관을 비유) ‘기’ 등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성폭력 발언이다. 그럼에도 제목에 ‘언어 성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이라고만 명시한 것은 사건의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보도 행위다.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에 제 10조에 의하면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통념 재생산을 방지해야 한다.</p> <p>현행 가이드라인은 언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지 않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범죄자를 부를 때 희화화된 속칭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용어처럼 사건의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p>	

둘째, 여성이라는 성별을 강조시킨 피상적인 단순 화제성 보도

다음은 여성의 정치사회적 성공이나 경성 이슈와 관련해 성과나 역할에 주목하기보다는 여성성을 부각시켜 성별에 초점을 맞춘 보도이다.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심층 보도가 아닌, 여성이라는 성별을 강조시킨 피상적인 단순 화제성 보도로 전락시켰다.

MBC 유충환 기자	김여정·최선희·현송월·김성혜…곳곳에서 北 여성 맹활약
<p>본 보도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여성들이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김여정 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등의 인물들에서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포착하여 보도하고 있다.</p> <p>리포트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오빠’를 밀착 보좌했다”는 표현을 쓴다. 이는 김여정 부부장의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오빠’, ‘동생’ 등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의도적으로 김여정의 성별을 부각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여성의 종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읽힐 수 있다.</p> <p>또한 최선희, 김성혜, 현송월 등 북한 여성들의 역할을 묶어 보도하는 것 자체도 문제적이다. 이는 언뜻 보면 여성이 중심이 되는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업무 등의 다른 연관성이 아니라 ‘여성’이 행위 주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성차별적 묘사이고 뉴스 수용자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이하 생략)</p>	

같은 주제를 다룬 KBS 황정호 기자의 “‘김정은 그림자 수행’ 김여정, 실세 입증” 보도는 모범적이다. 불필요한 성별을 빼고 김여정 부부장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여성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 점들을 강조했다.

셋째,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 한 보도

성범죄 보도를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도하고 여성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묘사했다. 이는 여성들에게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남성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했다. 또한 가해자의 일탈성을 부각시켜 가해자 남성을 일반인들과 분리함으로써 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젠더 불평등에 따른 권력관계, 남성 중심의 성문화 등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으로 차단했다.

MBC 임소정 기자	몰카 촬영…전신은 괜찮고 허벅지는 안 된다?
<p>MBC 뉴스데스크의 7월 15일자 보도는 불법촬영(일명 몰카) 범죄를 재연하는 과정에 2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중략) 하지만 영상은 핸드폰으로 균중을 찍는 모습, 특정 두 여성의 다리를 뒤에서 찍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등 불법촬영을 재연한 모습을 보여준다.</p>	

불법촬영의 처벌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스에서 불법촬영을 스스로 재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중략) 불법촬영 재연이 범죄자의 시각에서 재연되었다는 점이다. 보도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다리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장면을 2번 연출하는데, 시청자의 시선은 다리를 찍는 핸드폰 화면을 향해 있다. 그 순간, 화면에 강조되어 나오는 여성의 신체는 성적 대상화 된다. (…이하 생략)

3. 그래서 어떻게 보도 할 것인가?

첫째,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짚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를 일탈한 개인의 문제로 보는 수준을 넘어 젠더 불평등에 따른 권력 관계에서 나온 행위임을 짚어야 하고 한국의 사회적 문제나 구조를 다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젠더불평등으로까지 논의를 확장시켜야한다. 또한 그 원인과 대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용어사용에 신중해야한다.

무의식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남성중심적 용어가 아니었는지 또는 언어폭력, 몰카 등과 같이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가 아니었는지 고민하며 사용해야한다. 잘못 된 용어를 사용할 시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잘못된 통념 재생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의해 여성이 왜곡되어 재현된다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인 태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셋째,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보도를 지양해야한다.

피해자의 성적인 특징이나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아야하고 사건보도 재현 시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재현법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이는 모방심리를 부추기고 피해자에게 2차적 가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방식을 바탕으로 언론은 인권사각지대인 여성인권 현안을 끊임없이 발굴해야한다. 지금까지 세계인권선언의 ‘모든 사람’에서 제외되어 왔던 여성들이 당당하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라는 말을 할 때까지 말이다.

CCTV 영상 보도의 경계는 어디?

임 지 수 (언론인권센터 모니터요원)

1. CCTV 장면 뉴스보도 이대로 좋은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CCTV 남용 가능성

CCTV는 사회 안정에 기여할 거라는 믿음 아래 공적·사적 영역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늘어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혹은 당사자도 모르게 개인에 대한 정보가 수집·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권에 사는 시민이 하루에 83차례나 CCTV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공적·사적 감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CCTV 영상 기록이 사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단, 언론과 공공기관등이 예외적 존재가 되면서 CCTV 영상의 남용 가능성은 남아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에게 영상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언론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취재·보도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다. 권리의 보장과는 별개로 언론은 기준 없고 자극적인 보도로 많은 비난을 사기도 했다. MBC 각목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SBS의 아동학대 보도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항의를 산 적도 있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CCTV 영상 보도에 대한 우려는 텔레비전 뉴스 경향성을 안다면

더욱 심화된다. 방송사 뉴스는 시간 제약 속에서 영상 이미지 중심으로 보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우려가 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우선, 현장의 그림이 되느냐 여부가 중시된다. 둘째,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면을 단순 보도하거나, 이슈의 극적인 면을 강조하게 된다³⁾. 리얼리티를 담보하는 CCTV 영상이 사건의 극적인 일면을 기록했다면, 공익과는 상관없을지라도 우선 순위로 뉴스에 보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인격권에 대한 고려는 후 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환경에서 방송의 내용과 영상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선정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CCTV 영상이 주로 사건/사고/범죄/경찰 등 한정된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영상을 극화해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충격을 선사하는 데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번 모니터링의 목적이다.

2. CCTV 영상보도, 어떻게 하고 있나?

(1) 사회 뉴스에 한정된 보도, 일회성 보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MBC 뉴스데스크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1건의 보도에서 CCTV영상이 사용되었다. 21일간 11건의 CCTV 영상을 이용한 보도가 나왔으니, CCTV영상은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사용된 꼴이었다. CCTV 영상을 이용한 보도는 “얼굴 때리고 머리채 잡고... '공포'의 응급실”, “여고생 시신서 수면유도제 검출... 범행 동기 '미궁'” 등 주로 사건/사고/범죄/경찰 뉴스에 한정돼 쓰였다. 11건 중 6건은 범죄 뉴스, 5건은 사건·사고를 다룬 뉴스였다. 범죄뉴스와 사건·사고 뉴스가 주제인만큼, 보도는 의외성, 잔혹성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었다. 보도는 주로 2분짜리 스트레이트 기사 형식이었다. 지속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같은 예외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는 기획보도, 혹은 후속 보도로 이어지지 않았다.

3) 최영목, 방송뉴스의 연성화, '필요악'인가 '편법'인가, 저널리즘 비평 제22권, 1997



(2) 자세한 범죄 묘사 · 강조하는 편집

CCTV 영상을 이용한 보도는 화면을 통해서나 기사를 통해서 해당 사건 장면과 범죄 장면을 묘사하는데 치중했다. 사건 장면에 빨간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확대, 슬로우 모션 등의 효과를 넣어 사건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리포트는 사건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7월 19일 “**학대 교사 ‘말 안 들어서 때린다’…부모 불안 증폭**” 보도에서 영상은 아이를 학대하는 짧은 CCTV영상 7개를 연이어 보여준다. ‘우는 아이의 배를 두세 차례 때리더니, 바닥을 흠치던 휴지로 아이 얼굴을 닦습니다.’ 등 상세한 폭행 묘사가 화면의 모습과 일치되어 흘러나온다. 7월 4일자 ‘**얼굴 때리고 머리채 잡고...‘공포’의 응급실**’ 보도에서는 1분 50초 영상 중 50초가 범죄 장면을 묘사하는 데 할애되었다. ‘팔꿈치에 얼굴을 맞은 의사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A씨는 이내 의사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등 상세한 범죄 묘사와 함께 영상은 코뼈가 부러져 피 흘리는 의사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화면에 딱 차게 보여주기도 한다. 1분 50초짜리 짧은 리포트 속에서 폭행 영상은 3번이나 반복된다.

(3) 개인의 문제로 환원

보도 내용에 있어 2가지 문제가 발견됐다. 우선 CCTV 영상을 다룬 보도의 절반이 폭행을 다뤘고 나머지 반이 사건 사고 뉴스를 다뤘다. 영상의 내용이 선정적이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CCTV 영상을 이용한 보도들이 주로 사건 묘사에 집중하다 보니 사건을 개인의 갈등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6월 26일자 MBC 보도 ‘

임대료 4배 폭등' 서촌 임대료 갈등 폭행사태로 같은 경우, 영상에서는 임차인 김 씨가 망치를 들고 건물주 이 씨를 쫓아가는 장면을 보여준다. 기사에서는 반대로 임차인 김 씨의 억울한 사연을 설명해준다. 이는 CCTV 영상에 담기지 못한 내막을 설명해주지만, 결국은 갈등이 두 개인 간의 문제라는 점을 드러낼 뿐,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적 경향성을 발견했다. **첫째**, CCTV 영상은 사건/사고/범죄/경찰에 해당하는 사회 뉴스에만 이용되고 있었다. 사건사고나 범죄에 관한 영상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컸다. **둘째**, 영상의 보도 방식이나 기사 내용이 CCTV 영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복, 확대 등의 효과와 시간의 절반가량 할애되는 묘사를 통해 선정적 소재의 뉴스들이 강조되고 극화되었다. **셋째**, 사건 전후의 맥락을 설명하고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는 보도가 아닌, 개인의 차원에서만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CCTV 영상을 이용한 보도가 일과성 보도로, 기획보도나 후속 보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3. CCTV 영상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1) 선정성

이 같은 경향성을 고려했을 때, 방송사들의 CCTV를 이용한 보도는 선정적일 가능성이 크다.⁴⁾ 선정적 뉴스의 문제는 공익적 정보 제공이라는 기사의 본질이 부차적인 것이 되게 하고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미지와 단편 사실이 본질이 되는 주객전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선정적 뉴스는 즉각적 반응·감정을 이끄는 감각적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 제공의 목적보다는 흥미를 끄는 오락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보도 내용의 휘발성과 시각적 스타일의 강조를 의미하는 선정성은 기사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흐리고 자극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를 화상 입게 했다는 한 엄마의 제보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국물녀' 사건은, 언론이 사건의 취재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CCTV 영상을 유통해 대중의 관심을 모았던 선정적 뉴스의 한 예시이다.

'아일란 쿠르디'의 경우처럼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미지가 대중의 힘을 단시간에 모

4) TV 뉴스의 선정성은 내용면에서는 범죄, 사고, 재난재해, 스캔들, 성과 같은 뉴스 소재에 대한 것이고 형식 측면에서는 타블로이드 스타일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목격자 시점의 카메라 워킹, 플래시 프레임 화면전환, 줌인, 배경음악, 슬로우모션, 높은 톤의 나레이션 등을 사용한 과도한 시각위주의 구성방식을 포함한다(Grabe, Zhou, Lang & Bolls, 2000, pp587~588).

오는 계경우도 있다고 혹자는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감정적 동요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난민에 대한 포용적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선정적인 보도 방식을 앞세우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오히려 그 전에 자극적 영상을 통해 받은 충격과 혐오감으로 폭력에 무뎌지고 이슈에 대한 시청자들의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네거티브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아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직책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2) 미흡한 인권적 고려

CCTV 영상을 이용한 사건 보도들에 인권적 고려는 미흡해 보인다. 2015년 1월, 아동 학대 보도로 해당 어린이집 아이들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고려해 폭행 장면을 자제하겠다고 말한 방송 3사. 그러나 폭행 영상을 다루는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응급실에서의 폭행 장면, 아동 학대의 장면들은 적나라하게 송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택배물류센터의 감전 사고 역시 사망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여전히 폭행 장면의 방송이 피해자와 주변 지인들에게 가할 2차 피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모자이크를 통해 인물이 특정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의 생생한 폭력이나 혐오에 대한 게이트 키핑을 통해 타인의 고통이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양태를 막는 것 또한 중요하다.

4. CCTV 영상보도, 3가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 가이드라인 1 - 이미지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

위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CCTV 영상 사용에 있어 언론사 내부에서의 합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 합의에는 3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이미지에 대한 확신이다. 방송 뉴스의 초점이 영상이 아닌 '기사'임을 이해하고 화면이 어디까지나 기사의 보조적 수단임을 원칙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다. BBC 제작 가이드라인은 '수위 높은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등 편집상 분명하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 주목할 만하다. 가이드라인에는 '단지 입수되었다는 이유로 폭력장면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부분도 있는데, 이는 자극적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선정성, 사건의 일면만을 보도하는 보도의 파편화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이드라인 2 - 선정적 보도에 대한 세세하고 일관된 기준

둘째, 선정적일 수 있는 보도 방식을 지양한다는 원칙적 합의와 함께 CCTV 영상이 성과 폭력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세세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영국의 BBC는 폭력 영상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성을 고려하여 특히 주의하고 있는데, 어린이와 같은 취약한 시청자 층이 볼 수 있는 시간대의 뉴스프로그램에서는 폭력적이거나 성적 영상이 나오기 전에 자막으로 고지를 해 보호자가 시청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사망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폭력 영상에 대한 클로즈업 불가, 낮시간대에 뉴스에서 반복되는 폭력장면의 빈도에는 주의를 기울일 것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한국에서도 전제가 되는 원칙 뿐만 아니라 보도 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합의를 이뤄 불필요한 선정성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3) 가이드라인 3 - 인권침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

마지막으로, CCTV 영상의 사용이 본질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고 타인의 인권과 공익의 충돌이 최소화 되는지점을 찾아내야 한다. 영국 BBC는 가이드라인 중 '프라이버시' 부분에 CCTV 활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문제들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CTV 영상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확성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용에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해서라도 한 개인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고발적 영상이 때로 사회의 구조적 개선을 이루어내는 폭발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증진과의 균형 속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노인보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강 은 (언론인권센터 모니터요원)

1. 노인 보도, 왜 중요한가?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사회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됐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고령화 문제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가 노인을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노인을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는 통합적인 사회로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이 노인 보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지금까지의 보도가 올바른 방향을 향했는지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2. 노인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1) 노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도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보도는 자칫하면 노인 존재의(노인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노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보도는 모든 연령 계층으로 하여금 노인을 사회적 골칫거리로 여기게 한다. 계속해서 이런 보도가 반복된다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언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보도가 그 대표적인 예다.

<마을 통째로 사라진다... ‘고령’ 한국 위기감> - JTBC 김태형 기자 (2018.09.30.)

JTBC의 이 기사는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아 노인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도했다. 특히 “길에는 노인만 눈에 띕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와 “마을회관 바닥에는 주민들의 약봉지가 쌓여 있습니다.”라는 보도는 그 의도가 저출산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지만 노인만 눈에 띈다는 워딩으로 자칫 노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나 사회에서 필요없는 자본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보도했다.

또한 “빈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부서진 집기가 가득한 것과 마을 주택이 고령으로 집주인이 숨지면서 자연스럽게 방치됐습니다.” 라는 보도는 복지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현상보도만 있어 노인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보도했다. 현상보도와 함께 노인들이 많은 마을에 정부의 행정지원이 미숙한 지점을 문제제기 했어야 한다(정진호 모니터 요원 보고서).

2) 별개의 TOPIC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노인 문제를 수단화

인권보도준칙 제6장 노인 인권 준칙에 근거하여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보도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꼬집거나 개선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고령층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유를 높아진 최저임금 탓이라는 이유 하나로 축소, 왜곡시켰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늙으면 ‘고용 사절’> - 채널A 권솔 기자(2018.05.31)

[김 모씨(78세) / 인천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잘 안 따라줘. (일자리가) 없어요."

"업종이나 지역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높아진 최저임금 탓에, 낮은 임금을 감수하더라도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다분히 친자본, 친기업적이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실업자가 늘었고, 그것이 하위계층 소득의 감소와 양극화 심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위한 수단으로 노인 문제를 인권

적 보도 관점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보도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는 자본과 노동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보다는 국가의 책무와 공동체의 유지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저소득 노년들과 실업자들에게 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사회구조적 접근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조상희 모니터 요원 보고서)

3) 노인 문제를 자극적으로 소비

노인 학대 문제를 단순히 사건 보도 식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자극적인 포인트를 잡아 보도하고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80대 치매 노인 묶고 13시간 방치 ‘학대’> - KBS 허성권 기자 (2018.06.25)

‘80대 치매 노인 묶고 13시간 방치 학대’는 울산의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문제를 다룬 보도입니다. 보도의 초·중반부에는 피해 노인이 학대를 당하는 영상으로, 후반부에는 피해자 가족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였다는 요양원측의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중략)

또한 노인 학대 문제를 요양원과 가족 사이의 개인적, 금전적 갈등으로 변질시킨 것도 문제입니다. 보상금의 구체적 액수는 이 보도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보도의 핵심은 노인 인권 보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금전적 액수와 이에 반발하는 요양원 측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초점이 ‘피해자 측의 금전적 보상 요구가 적절한가?’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윤정욱 모니터 요원 보고서)

4) 고령화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부각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인 문제 보도에서 단순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차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부양에 필요한 비용 부담’ ‘비용을 부담할 생산연령인구’ 등만을 언급하면

서 노인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부각하는 보도가 눈에 띈다.

<한국은 ‘고령사회’ 진입...일본보다 7년 빨리 늙는다> - MBC 신지영 기자 (2018.08.27.)

리포트에서는 ‘부양에 필요한 비용 부담’ ‘비용을 부담할 생산연령인구’ ‘성장 잠재력 약화’ ‘민간소비의 둔화’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언급하면서 고령사회의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중략)

물론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한국사회 현시점에서, 노인 부양 문제가 가져올 경제적 부담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해야 하는 문제가 맞다. 그러나 노인 관련 보도기사 비중 자체가 현저히 낮은 가운데서 부양 문제만을 부각하는 뉴스 한 꼭지만이 보도된 것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노인 문제는 좀 더 입체적인 시각에서 보도될 필요가 있다. (중략) 부양 문제만을 부각하는 것은 노인의 입장보다 예비 노인인 중장년층의 시각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뉴스의 주 시청자층이 중장년으로 이뤄져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파악된다(강은 모니터 요원 보고서)

5) 노인은 수동적, 의존적 존재라는 사회적 편견 강화

‘인권보도준칙 제6장 <노인인권> 제1조’에 따르면 언론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같은 장 제2조에 따르면,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보도들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고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아래의 사례들에서 보듯 “노화로 인한 박탈감과 불안감, 억울함”,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비싸게 땅을 판”, “피해자들은 대부분 판단력이 부족한 60대 노인” 등 노인의 수동적, 의존적,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한 보도들이 많았다. 순서대로정진호·조상희 모니터 요원의 보고서다.

<70대 노인 운전자 커피숍 돌진...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아> - MBC 이문현 기자 (2018.09.03.)

네이버에 ‘노인 운전’을 키워드로 검색하니, 이 보도를 비롯하여 “‘직진→좌회전’ 갑자기 바뀐 차로…대처능력 떨어진 노인들 ‘끼익’”, “운전대 잡은 노인, 사고 위험 ‘아찔’” 등의 기사가 나온다. 물론 노화가 진전됨에 따라 운전하는 노인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것도 일부 부정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러나, ‘노인 운전’에 대한 안전문제를 진정성 있게 제시하고 싶다면, ‘노인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운전자가 많아질 텐데 제도는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일본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외국의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강은 모니터요원 보고서).

<“그들은 거짓말 안 해요”... 유튜브에 갇힌 노인들> - JTBC 박병연 기자 (2018.07.22.)

하지만 jtbc의 “그들은 거짓말 안 해요...유튜브에 갇힌 노인들” 보도에서는 노인을 차별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노년층들이 언론을 못 믿고 유튜브로 세상을 접하고 뉴스의 사실여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접하는 것은 노년층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며 뉴스의 사실여부가 노년층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보도는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년층들의 사회참여 행위를 “일 년이 넘도록 무엇이 그들을 거리로 내 몰고 있을까요.” 라고 보도해 노년층이 잘못 된 정보에 선동당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러한 보도는 노년층들이 판단력을 잃은 채 쉽게 선동당하는 수동적인 객체로 규정한다. 이에 더해 그들의 집회 동기가 잘못된 정보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정보와 집회동기의 상관성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정진호 모니터요원보고서).

<“나를 입양해 달라” 벼랑 끝 하류노인> - 채널A 김승련 앵커 (2018.07.06.)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나를 입양해 달라” 벼랑 끝 하류노인> 의 보도는 인권보도준칙 제6장 노인 인권에 근거하여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부각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짜늘한 시신, 하류노인,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상황’ 등등. 노인에 대한 온갖 부정적 단어를 종합해 놓은 듯 하다. (중략) ‘저축해 놓은 돈이 많지 않은 이분들이 하류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었다는 보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현상을 단순히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친다. 노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엽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은 마지막 ‘산타클로스 비유’다. 이는 노인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종합적 관점에서 노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조상희 모니터요원 보고서).

3. 노인 보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1) 노인 자체를 문제 삼지 말아야, ‘노인 문제’ 아닌 ‘고령화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노인이 그 자체로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용어 사용이다. 2001년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어선 이래 ‘노인 문제’라는 단어는 귀에 익숙해져 문제의 모든 원인이 노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생각되고 있다. 더욱이 매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노인 문제’라는 단어의 빈번한 사용은 모든 연령 계층들로 하여금 노인을 사회적 골칫거리로 여기게 하고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왔다. 인구구조의 압축적인 고령화가 가져오는 사회문제를 이야기할 때 ‘노인 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고령화 문제’라는 단어의 사용이 더 적절하다.⁵⁾

2) 노인을 다룰 때는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해야

부양 문제만을 부각하는 것은 노인의 입장보다 예비 노인인 중장년층의 시각만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편향된 시각은 뉴스의 주 시청자층이 중장년이라는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노인보도는 좀 더 입체적인 시각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 정책, 사회 변화, 노인의 건강, 노인의 경제 상황 및 취업, 노인과 가족관계, 노인의 사회생활, 노인의 이성 교제 및 재혼 등 부양의 측면 외에도 노인 당사자의 관점에 집중하는 다양한 뉴스가 보도될 필요가 있다.

3) ‘고령화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기자 필요

많은 보도가 노인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이를 자극적으로 소비하고, 노인 문제를 수단화하는 등 노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을 끊임없이 타자화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학과 노인복지학계의 학문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노인관련 전문기자를 양성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고령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고 노인관련 보도기사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인과

5) 김미혜,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 - 오마이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03.

고령화에 관한 보도기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인식을 지닌 기자들에 의해 보도되어 노인과 고령화에 대한 조명과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6)

6) 서희정, TV 뉴스의 노인 관련 보도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 현안 중심, 성공회대 석사논문, 2006.

[참고자료]

‘인권보도준칙’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 보고서

기간	2018년 6월 1일 ~ 9월 30일
대상	KBS, MBC, SBS, JTBC,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A 주요 메인뉴스
모니터요원	언론인권센터 모니터팀 (강보현, 강은, 백다니엘, 윤정욱, 임지수, 장예지, 정진호, 조상희, 최소영)

(사) 언론인권센터

인권보도준칙 (2014년 개정)

■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9.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주요 분야별 요약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가.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추보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노사 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 다.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 반화하지 않도록 한다.
 -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 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라.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마. 자살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 살을 미화·합리화하거나 실행방법을 묘사하지 않는다.
 - 바. 인용이나 인터뷰를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 한다.
 -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 마.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

- 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공개하지 않는다.
- 바.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 사.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 나.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

력한다.

-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다.
-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도한다.
-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제9장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1.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 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동의가 없는 한 성명, 출신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나. 북한이탈주민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 다. 사회 부적응 등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경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2. 언론은 통일이라는 장기적이고 성숙한 관점으로 북한 주민을 바라본다.
 - 가. 북한 주민의 경제 상황이나 외부와 고립되어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지 않는다.
 - 나.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 유발 시 북한의 잘못은 지적하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는다.
 - 다.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식별이 가능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한다.

■ 총강

제목	최저임금법 의결...노동계, 대정부 투쟁 예고 (KBS) '최저임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노동계 '강력투쟁' 예고 (JTBC)		
방송사	KBS 조혜진 기자 JTBC 구희령 기자	보도일	2018-06-05
준칙	언론인권보도준칙 총강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1장의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성자	장예지
<h3>최저임금문제, 복합적 관점의 필요성</h3> <p>6월 5일 KBS와 JTBC에서 다룬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이다. 모두 스트레이트 보도로, 국무회의 의결 후 노동계의 반응을 담고 있다. 양대 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일으킬 의지를 다지는 등 노동계의 격렬한 대응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KBS 보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행진/결의대회 및 입장을 밝히는 보도를 했다. JTBC 또한 양대노총의 입장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p> <p>특기할 점은 이번 개정의 주요 주체인 국회와 경영계의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감한 사안으로, 개정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가 나서서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으므로 여야는 물론 경영계에 유리한 개정안에 대한 경총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기사는 해당 개정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노동계의 격한 반응만을 중심으로 다뤘는데, 투쟁적으로 집회하는 노동자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이는 <언론인권보도준칙 총강의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 1장의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노총과 노동자를 향한 '거칠게 투쟁하는' 이미지가 강조되는 방식으로 이들의 반대를 다룰 뿐, 그 반대의 합리적 이유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단지 투쟁 중인 노동자의 주장만을 소개해 그것의 합리성과 근거는 알 수 없고,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효과를 낳는다.</p> <p>JTBC는 노동계의 반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어려워졌다고 단정하는데, 이 또한 사회적 합의에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노총을 부각할 위험이 있다. 노동계가 위원회에서 나갔기에 논의의 테이블이 흔들린다는 것은 표면적 현상이다. 그들의 선택의 배경과 최저임금 개정안의 불합리성 혹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는 하나도 다뤄지지 않은 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불발을 노동계 탓으로 돌린다면, 이는 보도의 공정성이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p> <p>노동 관련 현안일수록 그 참여 주체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물론 의결에 영향을 미친 국회의원과 경, 재계 관계자 모두의 입장이 드러나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 시청자가 이해할 정도의 세부 설명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한 반대는 어</p>			

짜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만을 부각한다면 마치 그들이 법에 순응하지 않는 불온한 대상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미비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노동계의 지적이 비합리적이려면 그 또한 왜 그런 것인지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목	제주도 온 예멘 난민...수용 놓고 '격려의 시선 vs 우려' (김민정 기자) 난민 수용 문제, 이제는 현실...현재 상황과 주어진 과제 (원종진 기자)		
방송사	SBS 김민정 기자 SBS 원종진 기자	보도일	2018-06-20
준칙	인권보도준칙 전문/총강 언론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고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작성자	장예지
<p>예멘 난민 사태, 대립하는 갈등을 해소할 보도의 필요성</p> <p>본 보도는 예멘 난민 입국 후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줬다. 예멘의 전쟁 상황부터 현재 난민의 입장 및 제주도민, 당국의 생각을 병렬적으로 보여준다. 예멘인의 입으로 예멘의 내전 상황을 전하고, 그들을 위한 인권단체의 지원과 제주도민의 우려의 시선, 제주 출입국의 상황 인식이 주를 이뤘다. 다만 선두에 등장했던 예멘인 인터뷰가 다시 나오며 전쟁 동안만 머물다 돌아갈 것이라는 그의 생각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p> <p>아쉬운 점은 보도의 성격이다. 각 주체의 입장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국내에 양분된 격려의 손길과 우려의 시선, 그리고 당국의 입장이 유기적으로 제시된다기보다 나열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데 그친다. 즉 예멘인은 예멘인대로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리고 난민의 존재를 우려하는 시민과 당황을 감추지 못하는 당국의 입장이 파편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p> <p>이러한 보도는 각 주체들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권보도준칙 전문과 총강이 밝히듯, 언론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고,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충돌하는 입장을 나열하는 데 그친다면 예멘인은 한국인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한국인은 난민의 위기 상황에 공감하는 등의 효과를 바라기 힘들다. 특히 갈등하는 주체를 중재할 의무도 있는 국가 당국자는 단순히 이를 '초유의 사태'로만 바라보고 있어 정부의 역할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단일국가 면모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500명이 넘는 난민이 들어온 초유의 사태에서, 난민을 향한 강한 거부감 표출은 그만큼 난민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국제적으로 난민 지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난민에 대한 공중의 인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p> <p>원종진 기자의 “난민 수용 문제, 이제는 현실...현재 상황과 주어진 과제”는 난민사태를 다룬 심층 보도로, 이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 난민 시스템 보완 문제를 조명했다.</p>			

물론 난민법 자체의 문제도 크지만, 인권 사안은 단지 ‘국내법과 국제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난민을 거부하거나 강제송환하자는 주장은 인권 문제도 있지만 현실성도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보여줄 뿐이다. 하지만 현재의 갈등은 난민에 대한 이해 부족, 그에 따른 공존의 불가능성에 초점이 있는데 이는 인권 감수성과 직결되는 지점이다. 때문에 예멘인이 난민 인정을 받는 데 많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 뿐 아니라 이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차별적 시선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았지만 국민청원 20만 돌파 등으로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데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언론의 보도도 필요하다. 물론 예멘 상황이 진정되면 대부분은 본국으로 돌아갈 테지만, 중요한 건 현재다. 현재 불거지는 난민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와 조우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언론이 나설 수 있다. 이는 단지 언론이 난민의 편을 들어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갈등의 내용을 상세히 되짚고,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기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제목	밀봉 안 된 채 쌓인 음식…기내식 공장도 과부하 난장판		
방송사	JTBC 정재우 기자	보도일	2018-07-05
준칙	인권보도준칙 총강	작성자	정진호
<p>문제는 노동자가 아니다</p> <p>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이 연일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사측이 기내식 업체에 과도한 물량을 요구하면서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일어났다. 아시아나 항공의 하루 평균 기내식 소비량은 2만 5천식이고 기내식 업체 샤프도앤코의 생산량은 3000식이다. 아시아나 측이 원래 계약하고 있던 업체의 공장에 불이 나 소규모업체에 과한 물량을 발주한 것이 이번 기내식 대란의 핵심이다.</p> <p>일반적으로 일감이 늘어나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용규모이상의 물량 발주로 인해 노동자들은 밤낮없이 일 해야 했고 사측의 압박이 하청업체 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협력사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을 소규모 업체인 '샤프도앤코'와 맺으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다.</p> <p>jtbc의 “밀봉 안 된 채 쌓인 음식…기내식 공장도 과부하 '난장판'” 보도에서는 사측의 경영실수로 노동자들에게 떠 넘겨진 과도한 업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다. 과도한 물량 발주로 인해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상황에 대해 보도해야했고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은 경영판단으로 그들에게 떠넘겨진 과도한 업무를 조명했어야한다. 기사가 제기한 위생문제에 대해 샤프도앤코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했지만 하청업체 측의 입장은 보도 말미 “위생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인터뷰로 끝난다.</p>			

인권보도준칙 총강에서는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JTBC의 위 보도는 위생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한 업체의 일탈적 행동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도한 업무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도는 없다. 과도한 업무에 대한 비판이 없어 위생문제가 자칫 노동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위 기사는 문제의 본질인 아시아나 항공의 과도한 물량 발주와 이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해 보도해야 할 것이다.

제목	"멈춰!" 동승자가 말리는데도...BMW 과속 영상에 '분노'		
방송사	SBS 송성준 기자	보도일	2018-07-11
준칙	<총강>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작성자	장예지

블랙박스 저널리즘과 사실확인

본 보도는 과속하는 BMW 승용차에 의한 사고를 다룬다. 블랙박스 영상을 수 초간 내보내며, 보는 사람이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을 주었다. 뺨 뚫린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는 운전자 시각을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은 마치 레이스 경기를 하는 것 같은 현실감을 자아냈다. 심각한 교통사고이지만 생생한 과속현장을 강조해 사고의 본질이 지워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고 차량이 'BMW'임을 강조하고, 네티즌의 반응을 보도함으로써 고급 승용차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해석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블랙박스 영상 사용은 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사고 직전의 장면까지 그대로 보여줘 일종의 '스릴'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는 시청자가 사고의 심각성보다 영상 자체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사고 보도의 목적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과 그 위험을 강조하고,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블랙박스 영상 사용은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보다, 하나의 흥미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를 향한 네티즌의 분노와 비난을 전하는 방식 역시 일종의 여론 재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물론 운전자의 잘못은 명확하지만, 이를 '고의로' 낸 것이라는 네티즌 반응은 밝혀진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이를 통해 사고의 성격을 오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차량 제조회사를 특정해 '고급 승용차를 모는 운전자가 낸 사고'라는 프레임으로 운전자 개인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기 쉽다. 인권보도준칙 총강의 6항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내용에도 대치된다.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주변에서 흔한 사고 중 하나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언론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의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속 현장과 차량을 강조하는 방식은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힘들다. 오히려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세심함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네티즌의 주관적인 반응을 전달함으로써 사고가 '고의'임을 암시하기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는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고, 영상이 사고를 자극적으로 묘사할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고의 심각성을 전하기 위해서는 실제 과속 단속 실태나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 수치 등을 함께 전해 과속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해야 한다. 단지 시민(네티즌)의 반응을 전하는 데서 나아가 더 깊은 취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BMW 차량'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보도가 단지 한 개인을 향한 다수 시청자의 비난으로 흐를 위험도 고려해야 했다.

제목	국민연금 개편안에 시민들 '부글부글'...장관 '긴급 진화'		
방송사	SBS 배준우 기자	보도일	2018-08-12
준칙	<총강>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	작성자	장예지

갈등 저널리즘을 넘어선 보도

본 보도는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및 악화된 여론을 다룬다. '보험료는 올라가고 반대로 연금은 더 늦게 받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지부 장관이 입장문을 내놓고,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리포트 말미에는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석을 담았다.

이러한 보도에서 아쉬운 점은 리포트에 언급됐듯, '복잡하고 갈등 요소'가 많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없이 정부와 여론의 갈등만을 부각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식화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생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주기보다, 갈등 그 자체만을 다룬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줄이고, 정확한 정보가 공론장에서 오가도록 하진 못했다. 때문에 인권보도준칙 총강의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 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연금 수급 연령과 액수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 사이 갈등만을 보여주는 방식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또한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뉴스 내용으로 전달하기만 해, 국민연금에 관한 현재의 오해를 강화할 여지도 있다. 현재 '다 깎는다는 얘기만 나오는 연금개혁'이라는 전문가의 분석 또한, 이후 발표될 공식적인 개편안이 "수급 연령을 높이고 보험료는 올릴 것"이라는 내용을 전제한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국민연금을

향한 현재의 불신만 더 키울 뿐이다.

국민의 알권리 신장 차원에서 현재의 비난 여론을 되짚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우선한 보도가 필요하다. 중대한 사안을 ‘떠보기식’으로 접근한 정부의 비판은 확실히 하되, 현재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구심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대립하는 대상 간 갈등만을 전달하는 갈등저널리즘의 형태를 넘어, 국민연금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는 지적하고, 현 체제의 한계와 이상적인 개편안은 어떤 내용이어야 할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이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개편 문제에 있어선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은 이를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 현 보도처럼 단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을 듣고, 전문가 조언을 얻는다면, 개편안이 나아가갈 방향까지는 토론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따라서 언론은 일차적으로 오류가 있는 정보들이 공론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앞으로의 개편안을 둘러싼 시민사회와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주체의 입장을 담아야 할 것이다.

제목	"진단 다르니 처방도 달라" 지적...경제 '투톱' 괜찮나		
방송사	JTBC 이현 기자	보도일	2018-08-20
준칙	인권보도준칙 총강	작성자	정진호
<p>잠시만요, 서술형문제를 객관식으로 풀라고요?</p> <p>고용통계가 발표 된 이후 우리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약 5000명 정도 되는 역대 최저 취업자 수 증가폭으로 ‘고용쇼크’ 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보수진영은 정부의 급격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초라한 성적표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 시키는 정책방향,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과감하게 진행했어야 하는 데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다고 진단했다.</p> <p>언론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청와대와 행정부의 경제 투톱의 정책적 혼선을 비판하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 성장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데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관료의 진단은 조금씩 달랐다. 장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 부총리는 고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관해서는 장실장은 변함없고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부총리는 수정할 수 있고 경제상황이 금방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p> <p>우리사회가 다각도로 발전하면서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그렇다. 명확한 해답이 없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기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고 지금까지 기업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진행했는데 왜 격차는 더 심해</p>			

졌는가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두 의견 다 충분히 들어볼만 하다.

하지만 jtbc 위 보도에서는 장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불협화음, 엇박자의 시작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혼선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나와 다른 처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방향은 정해져있으니 한 방향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문하는 것 같다. 위 보도는 민주적인 관점에서 보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민주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보도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해답이 없는 경제문제에 다양한 접근으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있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분배정책이든 성장정책이든 말이다. 장실장과 김 부총리의 격론은 촛불혁명을 거친 국가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자세다. jtbc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민주사회에 있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인식과 함께 시민들이 토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할 것이다.

제목	촬영 전부터 '악플·평점 전쟁'...영화 '82년생 김지영'		
방송사	JTBC 권근영 기자	보도일	2018-09-14
준칙	인권보도준칙 총강	작성자	정진호

혐오의 다른 이름은 차이가 아니다

혐오의 문제를 가치관의 차이로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가 극우성향 사이트의 글과 행위에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혐오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그들의 행위를 비판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혐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 지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도해야 한다.

언론은 인권보도준칙 총강에 나와 있듯이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인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JTBC의 위 보도는 인권적 측면에서 2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직업 앞에 성별을 붙이는 보도행위 둘째, 혐오의 문제를 가치관의 차이로 보도한 행위다.

최근 언론에서 거의 퇴출되고 있는 직업 앞에 성별을 붙이는 보도행위가 이번 보도에서 반복되고 있다. 보도에서 정유미씨의 모습이 직접 나와 직업 앞에 성별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성별을 붙인 것은 인권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졌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위 보도에 나와 있는 “여배우를 비난하는 댓글과 응원하는 댓글이 엇갈려 남·여간성 대결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워딩은 이 문제를 혐오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보도는 혐오의 문제를 가치관의 차이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갖지 않을 경우 과거의 회귀는 역사에서도 경험 했듯이 재빠르다. JTBC의 위 보도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혐오의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제목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사퇴"...민주노총도 곧 탈퇴		
방송사	MBN 정설민 기자	보도일	2018-05-29
준칙	인권보도준칙 1장 민주주의와 인권 - 2,나	작성자	최소영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노조 사퇴 문제, 최소한 노조 입장도 설명해야

MBN뉴스는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쪽지를 노조 사퇴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앵커멘트에 한국 노총이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민주노총의 사퇴 소식도 연달아 전했다. 기자 멘트에서도 '위촉된 지 보름 만에 사퇴했다는 점, 또 이로 인해 최저임금 위원회 업무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왜 노동자 측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보도하지 않았고, 노동자의 입장이나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설명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 방식은 뉴스가 노동자를 '일탈 행위자'로 쉽게 규정해버리는 문제를 만든다. 주지하다시피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의 문제를 넘어선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산입 범위 등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런데도 해당 보도는 산입범위 논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측의 사퇴 사실만 부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노조가 국회 업무를 방해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기 쉽게 만들어 버린다. 예컨대 보도에서 노조 측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한국 노총의 "사형선고를 선언합니다"라는 멘트만 삽입한 것이 투쟁/저항적 성격만 부각시켰다. 아울러 마지막에 "노정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멘트로 마무리를 하면서 노동자 측이 노사 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사건을 편파적으로 프레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MBN의 보도는 인권보도준칙 중 "노사관계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 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한다. MBN의 보도는 주로 사용자 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의 '말할 권리'를 묵살한 결과를 낳는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이 여전히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는 최저임금 논란의 극히 일부분만을, 편파적으로 다

루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뉴스에서 노동자의 사퇴문제를 문제 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 왜 노동자들이 사퇴를 했는지, 이들의 의견이 어떤 점에서 타당성이 없는지/혹은 있는지 꼼꼼히 짚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소수 노동자들의 권리를 넘어 노동을 하는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 또한 최저임금이 늘 예민한 문제였던 만큼, 양쪽 의견을 모두 전달한 후 사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섞일 수 있도록 하는 방송사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제목	강남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 땅부자'가 매입 "내일 마트 문 닫아요"... 쇼핑카드·바구니 '동나' 아베 앞에서 '김정은 친서' 자랑... 복미 다시 '속도'		
방송사	MBC 신정연·여홍규·황의준 기자	보도일	2018-09-11 2018-09-22 2018-09-27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제1·2조	작성자	강은
<p>언론이 인권보도 준칙을 위반하는 사례 가운데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는 주로 용어 사용에서 나타난다. 한국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국가위원회와 함께 2013년 조사한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준칙'(36%) '성평등 보호 준칙'(26.7%)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준칙'은 25.8%로 3번째로 많이 위반하는 준칙이었다. 이와 같이 '성평등 보호 준칙'만큼이나 많이 위반되는 조항이지만 상대적으로 시청자가 문제 의식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상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많기 때문이다.</p> <p>인권보도준칙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준칙' 미준수 사례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일반화해서 사용'이 35.4%로 가장 많고, '계층갈등 조장,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표현 사용',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사용', '권위적인 용어 사용', '노사관계에 대한 편파 보도나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표현 사용'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p> <p>9월 11일 보도에서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두고 '두 외교수장'이라고 일컫고 있다. '인권보도준칙 제1장 제1조 - 나'에 따르면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관련된 실천 매뉴얼에 의하면 '통치권자' 대신 '대통령', '영수회담' 대신 '고위회담', '수장·총수' 대신 '대표'로 바꿔쓰는 식으로, 권위적인 용어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 리포트에서도 '두 외교수장'이 아닌, '두 외교 대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p> <p>9월 22일 보도에서는 마트에 장을 보러 오는 소비자를 두고 '고객'이라고 칭하고 있다.</p>			

‘인권보도준칙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 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다) 관련 실천 매뉴얼에 의하면, ‘고객’, ‘사은품’ 등은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것들은 ‘소비자’ ‘경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9월 27일 보도에서는 지방 부자들이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상경 투자’라고 일컫고 있다. ‘인권보도준칙 제1장 제2조-라’에 의하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실천 매뉴얼에 의하면, ‘촌사람’, ‘촌뜨기’, ‘촌스럽다’, ‘지방(대학)’ 등 특정인을 비하하는 표현하는 사용하는 사례에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이(도) 아닌’ ‘서울에 올라온다(상경)’, ‘대학로’(전국적으로 많은 지명임), 등 서울 중심적 표현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 제2장 인격권

제목	미국 텍사스 교교서 또 총기난사, 10명 사망		
방송사	TV조선 송지옥 기자	보도일	2018-05-18
준칙	2장 - 인격권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3장 권리침해 금지, 제 22조(공개금지) -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성자	윤정옥
<p>외국인과 자국민의 인권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p> <p>피해자의 신원보호는 가해자의 보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잘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각종 범죄 사건의 보도에서 가해자의 얼굴에만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하는 경우 또한 존재 했습니다. 특히 외신보도의 경우, 인터뷰 영상을 받아 그대로 송출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저 받은 영상을 송출했을 뿐이다’라고 하면 잘못과 책임은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p> <p>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3장 권리침해 금지, 제 22조(공개금지) 부분을 본다면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다면 tv조선의 보도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혹여나 존재할 수 있는 공범들의 보복과 피해</p>			

자가 입을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였다면 인터뷰 영상 공개에서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신속, 정확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고려 또한 못지않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이후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보복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외신보도의 경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받아 보도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의 주체도 모호해지기 십상입니다. 외신보도라고 검열, 필터링 없이 영상을 송출해서는 안 됩니다. 외신보도에서도 잘못된 보도로 피해자에게 입힐 수 있는 2차 피해를 고려해야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임대료 4배 폭등' 서촌 임대료 갈등 폭행사태로		
방송사	MBC 임명찬 기자	보도일	2018-06-07
준칙	인권보도준칙 2장 인격권 - 범죄보도(사건보도)	작성자	임지수
갑을 문제에 구조적 맥락 짚지 않은 보도			
<p>서촌 임대료 갈등 사건은 경제적 을이었던 임차인 김 씨가 건물주 이 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제적 을이 가해자로, 갑이었던 건물주 이 씨가 피해자가 되는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다. 즉 김씨와 이씨를 일방적 가해자,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MBC의 <'임대료 4배 폭등' 서촌 임대료 갈등 폭행사태로> 보도는 임차인 김 씨의 입장만을 고려한 보도를 통해 범죄의 원인이 건물주 이 씨에게 있으며 김 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p> <p>보도는 '급기야 건물주가 임대료를 한꺼번에 4배나 올리고 강제집행까지 하자 족발집 주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함으로써 건물주 이 씨의 악행이 폭행 사건의 원인이라는 기자의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결국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건물주 이 씨는 김 씨가) 참을 수 없게 신체적인 비하, 집사람 구속시킨다.'고 했다 등의 내용을 연달아 전달하여 임차인 김 씨의 폭행에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황상 폭행을 한 김 씨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인상을 준다. 한편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이씨의 상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간략히 처리하면서 폭행은 정당하며 미미하다는 인상을 준다.</p> <p>언론인권보도준칙 제2장 2-바에 따르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될 때 범죄는 정당화되며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폭행의 가해자인 김 씨의 입장에서 전달된 것은 임차인 김 씨가 일방적 약자라는 기자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p>			

보인다. 그러나 폭행 사건에서는 건물주 이 씨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다. 김 씨의 피해만을 언급해 김 씨가 일방적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는 보도는 폭행을 정당화하고 건물주 이 씨를 악당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이번 갈등관계의 본질은 임차인-건물주 간 비대칭적 갑을 관계에 있다. 건물주 이 씨가 김 씨를 내보내기 위해 임대료를 4배씩이나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김 씨는 ‘폭력’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갑을관계를 재생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서촌 임대료 갈등’과 같은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MBC 보도는 임대료를 4배 올리고, 건물주 이 씨가 김 씨를 협박했다는 보도를 통해 이 씨를 악인으로 묘사하기보다 구조적 맥락을 보도해 제도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제목	궁중족발 사태, 결국...살인미수 부른 임대료 분쟁		
방송사	KBS 김덕훈 기자	보도일	2018-06-07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 2장 인격권 2. 사 :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작성자	윤정욱
<p>사건 중심의 보도 보다는 제도적 문제를 짚을 수 있는 보도를 지향해야</p> <p><‘인권보도준칙 제 2장 인격권 2. 사 :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언론의 보도는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 그러나 KBS의 ‘궁중족발 사태, 결국...살인미수 부른 임대료 분쟁’ 보도는 지나치게 사건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p> <p>먼저, 보도의 대부분이 폭행 사건의 CCTV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분 30초 남짓한 영상에서 절반 이상이 CCTV 영상은 절반 이상의 분량을 차지한다. 물론 둔기를 사용해 폭행을 시도한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폭행 부분을 과하게 강조하여 보도가 폭행 사실만을 전달하는 자극적인 보도에 그치고 말았다.</p> <p>또한 보도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구체적 갈등 내용, 즉 개인 간의 분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인권보도준칙 제 2장 인격권 : 사’에서 말했듯이 보도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보도는 갈등을 개인화 시켜 갈등의 원인이 된 임대료 문제 등의 사회적 측면을 잘 짚어내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갈등을 개별적,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사회화시키고 정치화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p> <p>물론 폭행 사건의 보도도 중요하지만, 보도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고 제도 개선을 유도</p>			

해야 한다. 만약 궁중족발 사건 보도에서 불공정한 임대차보호법과 이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은 보도가 되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취업 증명 사진 찍다 '여대생 몰카'...영장은 기각		
방송사	MBC 배승주 기자	보도일	2018-05-28
준칙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10조 (잘못된 통념 재생산)	작성자	강은
<p style="text-align: center;">성범죄 보도 정확한 용어 사용 필요, '몰카'에서 '불법촬영범죄'로 바뀌야</p> <p>취업 증명 사진을 찍으러 오는 여대생을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관의 실태를 보도한 본 뉴스는, 제목에 '몰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보도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의 뉴스에서도 '불법촬영범죄'라는 말 대신 몰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짐작하건대,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와닿는 단어를 선택하기 때문인 것 같다.</p> <p>한국사회에서 '몰카'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을 치기 어린 개인의 놀이나 악의 없는 장난, 또는 한 사람의 진실이나 선의를 드러내기 위해 극화된 장치 등의 의미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용어는 여성 혐오 범죄인 '디지털 성폭력'의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불법 도촬' 등 범죄의 본질이 잘 드러나도록 용어를 바꾸면 이것이 폭력의 장치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 <p>언론인권센터 자료집에 실려있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제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여성민우회가 2012년 발표한 <성폭력보도 가이드 라인> 10조(잘못된 통념 재생산)에는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타 성폭력 관련 보도 기준 자료들을 다양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p> <p>성범죄 보도에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범죄의 결과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용어 사용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성범죄를 '부적절한 행동', '검은 손', '몹쓸 짓'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폭력성을 희석시키고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게 만드는 경우, 그리고 '몰카'와 같이 범죄 행위에 대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p>			

제목	[단독]"때리고, 더러운 휴지로 닦고"...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학대 교사 "말 안들어서 때린다"...부모 불안 증폭		
방송사	MBC 이문현 기자, 전예지 기자	보도일	2018-06-25 2018-07-19
준칙	인권보도준칙 2장 인격권 - 범죄보도(사건보도)	작성자	임지수

아동학대 원인, 교사 개인에게서 찾는 언론

언론은 사회를 반영하지만 재구성하기도 한다. 프레임이라는 틀을 통해 사회의 일면을 선택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으로 언론은 때로 사회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에선 범죄보도에 있어 프레임의 문제가 포착됐다. 아동학대의 원인을 보육교사 개인의 자질로 돌리는 보도를 통해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경향을 보여준 것이다.

피의자를 악마화하는 보도란 범죄보도 시 가해자의 비윤리적·일탈적 측면을 강조하는 보도를 말한다. 이런 보도는 개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의 잔학성이나 일탈성을 강조해 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차원으로 프레임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이나 심층적 진단은 결여된 채, 해결책을 제시할 때도,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보다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엄벌주의적 해결책을 요구한다.

개인에 대한 형량 강화가 범죄 예방에 해결책이라는 여론도 있지만, 엄벌주의적 여론은 인격침해를 허용하는 공격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 선정적인 보도로 형성된 공포, 두려움, 혐오감은 사회불신을 조장하고 개인들을 자기의 안전과 이익에 치중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 안전한 사회라는 상호 신뢰와 확신을 파괴한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6월 25일 송출된 아동학대 기사는 [단독] “때리고, 더러운 휴지로 닦고...또 어린이집 아동학대”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자세히 묘사한 뒤, ‘왜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을까’라고 물은 기자는 곧바로 ‘결국, 교사의 자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라는 말을 통해 보육교사 개인의 성격, 성질이 아동학대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원인 분석은 “...채용과정에서 인성 검사를 포함한 자질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의 인권 침해 요소가 높은 엄벌주의적 해결책 제시로 이어진다.

7월 19일자 보도에서도 이런 경향을 볼 수 있다. ‘학대교사 "말 안들어서 때린다"...부모 불안 증폭’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제목에서부터 개인의 일탈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도는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 학대 교사들이 학대 행위를 한 이유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딱히 이유가 없’어서 등이라며, 가해자들의 비윤리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기사는 가해자들의 사이코패스적 답변과 불안하다는 부모들의 인터뷰를 병렬적으로 제시해 시청자들의 분노를 이끌어 내고 있다. 1분 46초의 영상 중 단 10초 동안 언급되는 해결책은 청

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 학대와 관리 소홀을 엄벌에 처하라는 목소리’로 짧게 처리하였다. 역시, 엄벌주의적 맥락에 닿아있었다.

MBC의 두 보도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서만 다뤄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회적 맥락을 전하는 데 미흡하였다. 2번째 보도는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학대 행위자들의 비윤리성을 강조해 시청자들의 분노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사로 보인다. 이러한 두 보도로 보육교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형성돼 일부 가해자가 아닌 보육교사 집단 전체로 분노가 쏠릴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인다. 최근 언론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CCTV 실시간 중계 등을 해결책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보육교사 집단 전체로 분노가 확대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인권보도준칙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범죄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피해자 혹은 제3자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보도준칙 제2장 인격권에서는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문제를 조명할 때,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지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의도치 않은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선행 연구들, 논쟁들이 있어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정표가 세워졌다. 공익이라는 목적에 맞는 프레임을 설정하기 위해 인권보도준칙이 있다. 언론은 인권보도준칙에 유의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목	얼굴 때리고 머리채 잡고...'공포'의 응급실		
방송사	MBC 이경희 기자	보도일	2018-07-04
준칙	방송심의위 규정 제36조(폭력 묘사)	작성자	임지수
<p>CCTV 영상 이용한 사건 보도의 폭력성</p> <p>오늘날, CCTV 영상은 광범위하게 쓰인다. CCTV 영상이 있기 전까지 뉴스에서 나오는 영상들은 방송 제작자에 의해 연출된 장면들이었다. 연출된 장면들은 생생함이 떨어졌다. 뉴스가 현장의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임을 고려할 때, 목격자로서의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쉬운 지점이었다. 그 점을 보완하게 된 것이 CCTV다. CCTV는 어떠한 계획이나 연출없이 현장의 모습들을 기록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생생함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의 사실성과 함께 기사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었다.</p> <p>하지만 언론은 CCTV 영상이 주는 리얼리티를 상업적으로만 소비하고 있다. 기사를 전달하는 게 아닌, 폭력적인 CCTV 영상을 보여줘 화제를 모으는 것이다. ‘CCTV 영상의 보도</p>			

특성과 선정성, 현실 재현에 관한 연구(이창훈, 2012)'에서 4달간 CCTV 영상을 다룬 뉴스를 연구한 결과, 범죄 경찰을 다룬 사회 뉴스가 55.9%에 이르렀으며, 사건 사고까지 합한 사회 뉴스는 CCTV 영상을 활용한 보도가 85%에 이르렀다. 그 중 연성 뉴스만 분류해 질적 분석을 실행한 결과, 다수의 아이템이 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필자가 7월 한 달간 MBC 뉴스데스크에서 CCTV 영상을 이용한 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사회 뉴스 7건에서 CCTV영상을 활용했으며 그 중 4건의 보도가 범죄·경찰에 관련된 영상으로 아동학대, 보복 운전, 강도 등 폭력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보도 방식 또한 범죄 장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등 범죄 묘사에 치중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7월 4일 리포트는 전형적인 CCTV 영상을 이용한 범죄 보도였다. 영상은 응급실 의사가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CCTV, 핸드폰으로 촬영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팔꿈치에 얼굴을 맞은 의사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A씨는 이내 의사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등 상세한 범죄 묘사가 화면의 모습과 일치되어 흘러나온다. 영상은 코뼈가 부러져 피 흘리는 의사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주기도 한다. 1-2분 가량의 짧은 리포트 속에서 폭행 영상은 3번이나 반복된다. 폭력을 담은 내용뿐 아니라 보도 방식 또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사건을 과장해 보여주는 편집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방송심의위 규정 제36조에서는 방송에서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폭력을 담은 영상이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모방범죄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CCTV 영상을 이용한 보도가 사건사고, 범죄경찰 등 폭력적이고 의외성을 선사하는 뉴스에 무비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행을 볼 때, 7월 4일자 MBC 보도에 CCTV 영상 이용이 공익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타인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은 것일까? CCTV 영상을 사용하는 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혹자는 CCTV 영상 역시 알 권리에 해당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론 혹은 개인이 말하는 알 권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2011년 MBC는 각목살인 사건의 살인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내 많은 시청자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또한 당시에, 방통위 출범 이후 가장 큰 징계를 받았다. 그후 살인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렇듯 폭력을 그 내용으로 하는 CCTV 영상은 일반 공중의 윤리 의식과 공익성을 고려해 송출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제목	환자 연쇄살해한 日 간호사... “귀찮아서 그랬다”		
방송사	MBC 정시내 기자	보도일	2018-07-08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2장 (인격권) 성폭력범죄세부권고기준 실천요강 5,9	작성자	강은

본 리포트는 일본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수간호사가 환자 두 명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이 리포트의 첫 번째 문제는 피해 환자의 사진을 그대로 보도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초반 “이틀 새 80대 환자 2명이 숨졌다”라고 보도하면서 피해 환자의 사진이 나온다. ‘인권보도준칙 제2장 <인격권> 제1조-라’에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일본 언론에 이미 노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재생산하는 것이 옳은지 숙고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피의자의 얼굴이 드러난 영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 중반, “연쇄 살인 가능성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병원 수간호사였던 31살 구보키 아유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라고 보도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가감 없이 내보내고 있다. 영상의 구도나 화질 등으로 미루어보건대, CCTV에 촬영된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사가 취재 과정에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 보도에는 피의자의 전신 모습뿐만 아니라, 얼굴만 클로즈업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인권보도준칙 제2장 <인격권> 제2조-나’에는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 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언론의 자유라는 사회적 기본권에 비해 개별적인 인격권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얼굴을 공개하지 말라고 경찰에 권고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런 흐름의 기저에는 공인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범죄행위를 한 것조차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적 영역이라는 생각이 있다.

물론 이 리포트는 외국의 사례이고, 외국에서 이미 공개된 영상을 그대로 쓰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국내의 인권 보도지침에 따라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앞으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제목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학대” 보육교사 영장 있어도 못 보는 CCTV…실시간 모니터링 청원 봇물		
방송사	KBS 김민철 기자, 엄진아 기자	보도일	2018-07-19 2018-07-20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 2장 인격권 2-사	작성자	윤정옥

무의미한 사건 보도를 지양해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는 일주일에도 몇 건 씩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그런데 아동학대 보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형식으로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극적인 표제를 선정하고, 아동이 학대당하는 CCTV의 영상을 보여주고 마치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처럼 문제를 다룬다.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학대 보도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끝나고 만다.

인권보도준칙 제 2장 인격권 2-사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이 준칙에 따르면 단순한 사건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개개인의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보육시설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행 제도와 거시적 차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KBS의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학대, 보육교사 영장’ 보도에서는 어떤 가해가 있었고,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대한 언급으로만 내용이 구성되는 전형적인 사건 중심의 보도다.

KBS의 “있어도 못 보는 CCTV…실시간 모니터링 청원 봇물” 보도에서는 학부모들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요구 청원을 자료로 사용하며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해결책을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감시’에서 찾는 모습을 보인다.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앞선 보도 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며 보육교사들의 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간과했다고 생각한다.

자극적인 cctv 영상과 표제를 이용한 보도보다는 사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또한 사건을 어린이집과 부모간의 개인적 갈등으로 취급하는 보도도 경계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에는 국가의 책임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별도의 인·적성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현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시스템, 3년에 40시간에 불과하며 이조차 집단강의·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져 집중도가 떨어지는 재교육,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의 신뢰성과 같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짚어내고 국가의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순한 사건 전달식의 보도를 지양하고, 아동학대 문제를 개인 간의 갈등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에 대한

제도의 변경, 정책 마련과 같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보도가 되어야 유의미한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물량 떠넘기기'·'경쟁 출점'...본사 싸움에 멍드는 빵집 가맹점주 서울시 "담배 판매점 거리제한 100m로 확대"		
방송사	KBS 윤지연 기자, 강푸른 기자	보도일	2018-08-29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 2장 인격권 2-사	작성자	윤정욱
<p>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시 필요</p> <p>인권보도준칙 제 2장 인격권 2-사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이 준칙을 보면 언론의 역할은 문제를 알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해결의 방향성 제시 또한 언론의 역할인 셈이다. 그러나 많은 보도가 단순히 문제를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p> <p><'물량 떠넘기기'·'경쟁 출점'...본사 싸움에 멍드는 빵집 가맹점주> 보도는 그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위 보도는 단순히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소개 하는 데에서 그치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상공인들이 겪는 피해를 나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한 제시는 없는 채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멘트로 보도가 마무리 된다.</p> <p>반면 서울시 <"담배 판매점 거리제한 100m로 확대"> 보도는 좀 더 유의미한 보도로 평가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소개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위 보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나친 입점 경쟁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담배 판매점의 출점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주차단속 완화, 구내식당의 영업제한, 고용 보험료 지원 정책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알려준다.</p> <p>언론은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사건 전달식의 보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 구조적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p>			

제목	“요양원에 보낸다고?”…美 92살 노모가 아들 살해		
방송사	KBS 최동혁 기자	보고일	2018-07-05
준칙	1. 인권보도준칙 제 2장 인격권	작성자	윤정욱

외국인의 인권에 무감각한 보도를 지양해야

이 보도는 미국에서 일어난 존속살인을 다룬 보도로 가해자의 인격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의 초반 부분,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는 가해자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후 가해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진을 보여주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해자가 재판 받는 얼굴을 확대하여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이 보도에서 가해자의 얼굴 공개는 그리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얼굴은 보도 내내 과할 정도로 많이 송출됩니다. 만약 가해자의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격권을 침해할 요소가 다분하며 다음과 같은 준칙에 위배됩니다.

1. 인권보도준칙 제 2장 인격권, 2-나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2. 인권보도준칙 제 2장 인격권, 2-다 :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장 일반기준, 제 3절 권리침해 금지, 제 23조 3항 :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 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유독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할 때, 초상권과 같은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자국민에게만,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비록 외국인이고, 가해자이더라도 그녀도 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신상 공개를 자제하였더라면 더 좋은 보도가 되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몰카 촬영…전신은 괜찮고 허벅지는 안 된다?		
방송사	MBC 임소정 기자	보도일	2018-07-15
준칙	인권보도준칙 2장 인격권 - 범죄보도(사건보도)	작성자	임지수
<p>돈금없는 불법촬영 재연</p> <p>신문과 방송의 차이점은 영상의 유무다. 기사에 맞춰서 어떤 ‘그림’을 내보낼 것인가는 방송 뉴스를 만들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즉, 기사 내용뿐 아니라 영상도 신경써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범죄의 재연에 있어서 2차 피해나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MBC 뉴스데스크의 7월 15일자 보도는 불법촬영(일명 몰카) 범죄를 재연하는 과정에 2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p> <p>첫째, 내용과 영상의 적합성이다. 7월 15일, 몰카 촬영…전신은 괜찮고 허벅지는 안 된다?는 제목의 MBC 보도에서는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처벌 범위의 폭을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은 핸드폰으로 군중을 찍는 모습, 특정 두 여성의 다리를 뒤에서 찍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등 불법촬영을 재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불법촬영의 처벌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스에서 불법촬영을 스스로 재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재연 영상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 중대함이나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다.</p> <p>둘째, 불법촬영 재연이 범죄자의 시각에서 재연되었다는 점이다. 보도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다리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장면을 2번 연출하는데, 시청자의 시선은 다리를 찍는 핸드폰 화면을 향해 있다. 그 순간, 화면에 강조되어 나오는 여성의 신체는 성적 대상화 된다. 영상을 통해 시청자는 불법 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 중심의 보도 혹은 영상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p> <p>언론인권보도준칙 제4장에서는 언론이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장 인격권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번 MBC 보도를 통해 방송에서 불법촬영 재연이 특별한 고려나 성찰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범죄 재연에 추가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p>			

■ 제3장 장애인 인권

제목	6년 만에 다시 현재 공개변론…낙태, 현실은		
방송사	연합뉴스TV 차병섭 기자	보도일	2018-06-08
준칙	인권보도준칙 3장 장애인 인권	작성자	백다니엘
<p>선거철이 되면 여러 사회 구성원의 투표 현황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보도 가운데 장애인의 투표에 관한 보도도 항상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보도가 이동권에 대한 문제에 국한해 이동권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가 미비하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장애인의 투표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해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줬다.</p> <p>보도는 장애인들이 단순히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투표소에서 겪는 불편함 혹은 치욕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대책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언론인권보도준칙 제3장 1-라에 따르면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이 투표를 하며 겪는 물리적인 불편함을 보여주지 않았다. 나아가 짧은 보도였지만 장애인들이 투표 때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 비밀투표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p> <p>다만 장애인들이 신체적 불편함 때문에 다른 이들로 도움을 받는 상황에도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해 또한 비밀투표의 문제는 비단 지체장애인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비밀투표에 대해 더 자세히 보도할 필요가 있어보였다. 가령 현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조력자는 이미 서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적 조력인 배치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비밀투표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장애인들에게서 나오고 있다.</p> <p>발달장애인들이 ‘맞춤형’ 그림으로 된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통해 보도한 것도 좋았다. 하지만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해 그림 등 쉽게 설명된 투표 안내자료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추상적인 언어나 어려운 단어들을 풀어쓰고 그림을 넣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장애인들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인터뷰나 관련 자료를 통해 더 깊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p> <p>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보도는 좋았지만 좀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안이한 장애인 문제 인식에 대해 꼬집거나 보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투표 안내자료 제작을 촉구하는 등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제시해 장애인의 투표 문제를 환기해야 한다.</p>			

제목	희귀병 '이분척추증' 따뜻한 시선부터		
방송사	MBC 공윤선 기자	보도일	2018-05-21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작성자	임지수

동정의 시선 부추기는 장애인 보도

MBC의 이번 보도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총체적 어려움을 제시하는 한편, 그 해결책으로써 '따뜻한 시선'이 의미하는 연민의 시선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단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언론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라.에 따라 언론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MBC의 이번 보도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준다. '가영이'는 이분척추증이라는 병에 걸려 사회 생활을 하기 힘들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배변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변을 빼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엄마 아빠가 '5분 대기조'가 돼야 한다. 부모는 아이가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 한다. 기사는 또한, 관장기가 100% 환자부담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장애아가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그 돌봄과 책임을 가정이 지고있는 현 사회시스템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우리나라에선 이런 희귀난치병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고 전하면서 '가영이'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사회적 인식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때 기사에서 말하는 사회적 인식은 병에 대한 이해가 낮은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사는 장애인이 받는 '차이로 인한 차별'을 지적하진 않는다. 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가 높아지더라도 그것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순 없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한국 사회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정책적 대안도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이 기사는 '가영이'를 동정 어린 시각으로 묘사하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기사 제목부터 '따뜻한 시선부터'이다. 시청자들에게 연민의 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봅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보도대상은 어려운 처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상정한다.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으로서 '가영이'는 그 설명 자체로 동정의 대상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가영이'는 '혹시 실수라도 하면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인 연민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기사는 '주변에서 따뜻하게 이해만 해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 은연중의 가영이에 대한 시혜적 태도를 드러낸다.

감정은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온정주의적 개입은 강요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는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 ‘장애우’라는 단어의 의도는 나쁘지 않다. 장애인을 지지하겠다는 의미에서 벗 우(友)자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스스로를 장애우라 칭할 수도 없었다. 기사에서 ‘따뜻한 시선’이 요구하는 동정, 연민의 감정은 실질적인 지원과 연대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디어는 지금껏 장애인, 노인 등 소수적 약자를 동정의 대상으로만 그려왔다. 이는 또 다른 의미의 분리이다.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다시금 이질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가영이’는 스스로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1-마에 따르면 언론은 장애인을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이 약자라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권은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

제목	아파도 말 못해요... 씩어도 모르는 장애인 치아		
방송사	MBC 최유찬 기자	보고일	2018-07-08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3장 제2조	작성자	강은
<p>본 리포트는 장애인들의 구강 관리가 힘들다는 것을 제시하고 장애인 전문 치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이다. 약 2분 30초가량 리포트에서 절반인 1분 15초 이상을 지적 장애인 김병엽(36) 씨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쓰고 있다.</p> <p>우선 장애인의 신상 정보를 노출했다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제2조-다’에 의하면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된 실천 매뉴얼에 의하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지키기 : 장애인의 언론노출 시 자기결정권 존중하기, 촬영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영상이나 기사에 게재되는 사진에서 장애인의 인권감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다루기, 장애 부위를 부각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 인격권 지키기”라고 언급하고 있다.</p> <p>물론 지적 장애인인 당사자와 의사소통이 힘들었을 것이다. 기자가 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당사자의 보호자와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도 과정에서 장애인 신상 정보 노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리포트에서는 전신 마취 중인 김 씨의 모습을 자세한 영상으로 담고 있다. “의식이 없고 코에는 산호 투입 호스가 꽂혀 있다”라는 리포터의 묘사와 함께, 누워 있는 김 씨의 전신을 보여주고 얼굴 전체를 클로즈업하기도 한다. 심지어 산소 투입 호스가 꽂힌 코 부분과 치아의 모습을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p> <p>이렇듯 치료를 받고있는 장애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신상 정보 노출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질성을 부각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제2조-마’에는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관련된 실</p>			

천 매뉴얼에 의하면(제1조) 장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의 예시로 “소변 주머니를 방바닥에 끌고 다녀야 하는 불편한 몸이지만 걸레질을 도맡아 합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까지 불편한 그는 가난과 장애로 받아온 수많은 멸시와 냉대를 복소리로 치유해 왔다” 등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뉴스에서 육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도할 때 표현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 제4장 성 평등

제목	김여정·최선희·현송월·김성혜...곳곳에서 北 여성 맹활약		
방송사	MBC 유충환 기자	보고일	2018-06-12
준칙	언론보도준칙 제4장 (성평등)	작성자	강은

업무보다 성별에 집중하는 뉴스, 성차별적 보도 관행 바뀌야

본 보도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여성들이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김여정 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등의 인물들에서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포착하여 보도하고 있다.

리포트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오빠’를 밀착 보좌했다”는 표현을 쓴다. 이는 김여정 부부장의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오빠’, ‘동생’ 등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의도적으로 김여정의 성별을 부각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여성의 종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또한 최선희, 김성혜, 현송월 등 북한 여성들의 역할을 묶어 보도하는 것 자체도 문제적이다. 이는 언뜻 보면 여성이 중심이 되는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업무 등의 다른 연관성이 아니라 ‘여성’이 행위 주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성차별적 묘사이고 뉴스 수용자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언론보도준칙 제4장 (성평등) 제1조의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도는 업적이나 의미보다는 성별의 중요성을 포착함으로써 일종의 ‘신기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진출한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

한 일로 과대해석하여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에 갇히게 만드는 보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목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서 마취 환자 상대로 '성희롱'		
방송	JTBC 이상영 기자	보도일	2018-06-20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4장 성평등	작성자	정진호

내 딸과 아내를 위하여...

최근 우리사회에서 고정된 성관념으로 만연해있던 차별들을 하나 둘씩 고발하면서 성차별적 태도가 점점 퇴출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 속에서도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이에 인권보도준칙 제4장 성평등에서는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JTBC의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서 마취 환자 상대로 '성희롱'” 보도는 “남성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많은 이들이 문제제기하는 여검사, 여의사와 같이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는 워딩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남성의사”라는 워딩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언론에서 여검사, 여의사 등 특정직업 앞에 성별을 붙이는 일은 흔하다. 특히 전문직에 있어 여성이라는 성을 강조하는 행위는 더욱 많다. 위 보도에서는 의사의 성별이 성희롱문제의 큰 원인이 아니고 꼭 드러내야 하는 정보가 아니었음에도 직업 앞에 성별을 붙여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특정직업을 특정성에 한정하는 관념들을 강화시키고 특정직업을 갖은 사람을 성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남성의사라는 워딩이 자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도했다고 해도 의사 이외의 성희롱에 가담했던 간호사나 상담실장 앞에는 성별을 붙여 보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환자의 심신미약상태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대립구조를 생산한다. 위 보도에서 성 대립구조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성 간 발생하는 성폭력에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

위 보도는 여검사, 여의사와 같은 1차원적인 성차별적 워딩은 드러나지 않지만, 직업 앞에 특정성을 붙이는 것에 대한 신중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문제를 성별에 방점을 두어 보도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심신미약상태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초점을 두어 보도해야 할 것이다.

제목	[단독] 헌병단 장교가 여군 검사 성추행... 줄줄이 징계		
방송사	MBC 유충환 기자	보고일	2018-06-27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4장 (성평등) 성폭력범죄세부권고기준 실천요강 5.9	작성자	강은
<p>리포트에서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모두 ‘여군’을 사용하고 있다. 인권보도준칙 제 4장 1조에는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군’이라는 특수 집단 내에서 여성의 약자적 위치를 강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젠더 권력 관계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장교 앞에도 ‘남’을 붙여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p> <p>앵커 멘트와 리포트 전반에서 피해 여군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기사는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술 권유를 거절했고 이후 가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필요한 정보를 성찰 없이 포함시키는 것은 흥미 위주의 보도, 선정적인 보도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p> <p>또한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는 것도 문제적이다. 리포트에서는 "속옷만 벗어놓고 가도 된다"는 성희롱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성범죄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총강 5에 의하면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천요강 5에서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고 나타나있다.</p> <p>영상자료의 무성찰적 사용도 문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리포트에서는 성추행 범죄를 나타내기 위해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는 부분을 연출하여 클로즈업 샷으로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는 여성에게 남성이 다가가는 그림자를 연출한 화면을 사용하였다.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실천요강 9에 따르면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극적인 삽화를 사용하는 보도 행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의 성행위 대상으로 연상하게 만든다.</p>			

제목	“번식계획 없냐”... 교감이 교사들에게 언어폭력		
방송사	MBC 이준희 기자	보도일	2018-08-17
준칙	4장 성평등 성폭력보호 가이드라인 제10조	작성자	강은
<p>본 리포트의 헤드라인은 <“번식계획 없냐”.. 교감이 교사들에게 언어폭력>이다. ‘몸매’ ‘다리’ ‘공상문’(여성의 생식기관을 비유) ‘기’ 등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성폭력 발언이다. 그럼에도 제목에 ‘언어 성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이라고만 명시한 것은 사건의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보도 행위다. <성폭력보호 가이드라인>에 제 10조에 의하면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통념 재생산을 방지해야 한다.</p> <p>현행 가이드라인은 언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지 않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범죄자를 부를 때 희화화된 속칭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용어처럼 사건의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 역시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예시 외에도 ‘검은 손’ ‘짐승으로 변했다’ ‘나쁜 입’ 등이 그 예시이다. ‘몰카’ 또한 대표적으로 오용되는 범죄 용어 중 하나이다. 몰카라는 용어 안에는 불법적 의미뿐 아니라 유희적 의미도 함께 담겨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p>			

■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제목	제주서 또 중국인 살인…끊이지 않는 불법체류자 범죄		
방송사	JTBC 최충일 기자	보도일	2018-06-01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작성자	정진호

인권은 국적이 없다

헌법 개정이 비록 불발되었지만 내용을 보면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등 자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주자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 JTBC의 “제주서 또 중국인 살인…끊이지 않는 불법체류자 범죄” 보도는 중국인이 동료 중국인을 임금 문제로 살해한 것으로 시작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특히 중국인들의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고 보도한다. 사실관계는 맞지만 이 보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범죄의 원인을 불법체류에서 찾고 있는 보도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임금문제와 그 갈등이 폭력으로까지 치 달게 되었던 원인들을 추적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리포트는 부족하다. 보도에 나온 “제주지역은 비자없이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만큼 제주에 왔다 기한이 지나서도 돌아가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범죄, 특히 중국인들의 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라는 서술은 시청자로 하여금 강력범죄의 원인이 불법체류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준다.

둘째, 특정국에 편견을 갖게 하는 보도다. “제주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중국인은 2015년 260명에서 지난해 436명으로 67%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4월 제주 시내 주점에서 불법체류 중국인끼리 시비가 붙어 한 명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일 새벽에는 중국인 3명이 자동차 경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한국인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등 내국인 상대 범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라는 서술은 사실관계가 맞더라도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에 대한 왜곡 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인권보도준칙 제5장에서는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1조에서는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JTBC의 위 보도는 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발전 되었다. 하지만 보도의 기획이나 구조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와 기 특정성분이나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왜곡 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인권의 개념이 국가나 신분 등과 같은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이라는 이유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이러한 인권적 관점을 통해 보도해야 할 것이다.

■ 제6장 노인인권

제목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늙으면 ‘고용 사절’		
방송사	채널A 뉴스A 권솔 기자	보도일	2018-05-31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6장 노인 인권 <참고>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유엔총회)	작성자	조상희

국가의 책무와 공동체 유지 관점에 노인 문제 보도 필요

인권보도준칙 제6장 노인 인권 준칙에 근거하여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보도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꼬집거나 개선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고령층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유를 높아진 최저임금 탓이라는 이유 하나로 축소, 왜곡시켰다.

-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고령층에게는 더 매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일자리에서 더 밀려나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다니던 일터에서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 [김 모씨(78세) / 인천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잘 안 따라줘. (일자리가) 없어요."
- “업종이나 지역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높아진 최저임금 탓에, 낮은 임금을 감수하더라도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다분히 친자본, 친기업적이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실업자가 늘었고, 그것이 하위계층 소득의 감소와 양극화 심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위한 수단으로 노인 문제를 인권적 보도 관점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보도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는 자본과 노동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보다는 국가의 책무와 공동체의 유지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저소득 노인들과 실업자들에게 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사회구조적 접근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제목	80대 치매 노인 묶고 13시간 방치 '학대'		
방송사	KBS 허성권 기자	보도일	2018-06-25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 6장 노인 부분	작성자	윤정욱
<p>'80대 치매 노인 묶고 13시간 방치 학대'는 울산의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문제를 다룬 보도다. 보도의 초·중반부에는 피해 노인이 학대를 당하는 영상으로, 후반부에는 피해자 가족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였다는 요양원측의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된다.</p> <p>인권보도준칙 제 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p> <p>인권보도준칙 제 2장 인격권 2-사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p> <p>이 보도는 위 두 가지 준칙에 어긋나는 보도다. 먼저 보도가 제도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건 보도에 그친 것이 그 이유다. 언론은 요양원과 관련된 노인 학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현행 요양원 평가 인증 기준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등의 정책적 허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보도는 단순히 노인의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양측의 갈등상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p> <p>또한 노인 학대 문제를 요양원과 가족 사이의 개인적, 금전적 갈등으로 변질시킨 것도 문제다. 보상금의 구체적 액수는 이 보도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보도의 핵심은 노인 인권 보장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금전적 액수와 이에 반발하는 요양원 측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초점이 '피해자 측의 금전적 보상 요구가 적절한가?'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인 학대 문제를 가족과 요양원측간의 사적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며 국가의 책임을 배제시켜 버린다. 노인 인권 침해 문제의 책임은 단순히 개개인들에 있지 않다. 노인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보도의 후반부에 문제를 단순한 개개인들의 갈등으로 만들어 버려 국가의 책임은 배제된다.</p> <p>정리하자면, 이 보도는 단순한 사건보도의 형식 보다는 구조적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그리고 인권 문제를 개개인의 갈등으로 인식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p>			

제목	“나를 입양해 달라” 벼랑 끝 하류노인		
방송사	채널A 김승련 앵커	보도일	2018-07-06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6장 노인인권	작성자	조상희

산타클로스가 아닌 노인 문제의 본질과 개선책을 고민하는 보도 필요

‘모든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내용이 담긴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지 올해로 70주년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고령자는 생산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가치가 낮아 경제와 젊은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다. 나이가 들수록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변하는 사회구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많은 국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나를 입양해 달라” 벼랑 끝 하류노인> 의 보도는 인권보도준칙 제6장 노인 인권에 근거하여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부각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짜늘한 시신, 하류노인,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상황’ 등등. 노인에 대한 온갖 부정적 단어를 종합해 놓은 듯 하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도할 때에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저축해 놓은 돈이 많지 않은 이분들이 하류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었다는 보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현상을 단순히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친다. 노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엽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은 마지막 ‘산타클로스 비유’다. 이는 노인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종합적 관점에서 노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모든 노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제도와 정책의 변화 뿐아니라 인권 문화의 기반을 어떻게 다져갈 수 있을지 언론의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노인의 배제와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문화와 편견을 없애기 위해 언론은 노인 문제를 보도할 때 더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목	마을 통째로 사라진다... '고령' 한국 위기감		
방송사	JTBC 김태형 기자	보도일	2018-09-30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6장 노인인권	작성자	정진호
<p>노인을 위한 나라는 아직도 없다</p> <p>뉴스에서 저출산문제와 노인복지문제를 다룰 때 신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노인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보도는 그들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개인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JTBC의 위 기사는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아 노인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도했다.</p> <p>특히 “길에는 노인만 눈에 띕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와 “마을회관 바닥에는 주민들의 약봉지가 쌓여 있습니다.”라는 보도는 그 의도가 저출산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지만 노인만 눈에 띈다는 워딩으로 자칫 노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나 사회에서 필요없는 자본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보도했다.</p> <p>또한 “빈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부서진 집기가 가득한 것과 마을 주택이 고령으로 집주인이 숨지면서 자연히 방치됐습니다.”라는 보도는 복지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현상보도만 있어 노인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보도했다. 현상보도와 함께 노인들이 많은 마을에 정부의 행정지원이 미숙한 지점을 문제제기 했어야 한다.</p> <p>인권보도준칙 제 6장 노인인권에서는 노인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현상보도와 함께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러지 않을 경우 노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JTBC의 위 보도는 현상보도와 함께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해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p>			

제목	70대 노인 운전자 커피숍 돌진...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아		
방송사	MBC 이문현 기자	보도일	2018.9.3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6장 <노인인권> 제1·2조	작성자	강은
<p>본 리포트는 70대 노인이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보도하는 사건 보도이다. 헤드라인은 “70대 노인 운전자 커피숍 돌진…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아”이다. 사고를 낸 당사자가 ‘70대 노인’이기 때문에 기자는 이 사건이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p> <p>‘인권보도준칙 제6장 <노인인권> 제1조’에 따르면,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같은 장 제2조에 따르면,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도”해야 한다.</p> <p>관련 실천 매뉴얼에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한 사례’로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화로 인한 박탈감과 불안감, 억울함”,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비싸게 땅을 판”, “피해자들은 대부분 판단력이 부족한 60대 노인” 등이다.</p> <p>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언론의 노인 관련 보도에서, 주로 심리적 측면에서는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등의 인지능력 측면에서 부정적인 사례가 강조된다. 그리고 신체적 측면에서는 “지저분하다”, “초라하다”, “거동이 불편하다”, “노인성 질환에 시달린다” 등 외모나 허약 여부, 질병 유무의 측면이 강조되는 편이다.</p> <p>네이버에 ‘노인 운전’을 키워드로 검색하니, 이 보도를 비롯하여 “‘직진→좌회전’ 갑자기 바뀐 차로…대처능력 떨어진 노인들 ‘끼익’”, “운전대 잡은 노인, 사고 위험 ‘아찔’” 등의 기사가 나온다. 물론 노화가 진전됨에 따라 운전하는 노인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것도 일부 부정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러나, ‘노인 운전’에 대한 안전문제를 진정성 있게 제시하고 싶다면, ‘노인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운전자가 많아질 텐데 제도는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일본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외국의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p>			

제목	"그들은 거짓말 안 해요"...유튜브에 갇힌 노인들		
방송사	JTBC 박병현 기자	보도일	2018-07-22
준칙	인권보도준칙 제6장 노인 인권	작성자	정진호

노인도 시민이 되고 싶다

사회문화의 진보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많이 해소 되었다. 하지만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태극기집회’에 대한 기억으로 노년층과 그들이 많이 참여하는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노년층들의 주장이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틀렸고, 옳지 않았기에 차별적으로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인권보도준칙 제6장 노인 인권에서는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청년층과 차별적으로 인식해도 안 되고 그들의 사회참여행위를 특수하게 바라보는 관점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jtbc의 "그들은 거짓말 안 해요...유튜브에 갇힌 노인들" 보도에서는 노인을 차별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노년층들이 언론을 못 믿고 유튜브로 세상을 접하고 뉴스의 사실여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접하는 것은 노년층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며 뉴스의 사실여부가 노년층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보도는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년층들의 사회참여 행위를 “일 년이 넘도록 무엇이 그들을 거리로 내 몰고 있을까요.” 라고 보도해 노년층이 잘못 된 정보에 선동당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러한 보도는 노년층들이 판단력을 잃은 채 쉽게 선동당하는 수동적인 객체로 규정한다. 이에 더해 그들의 집회 동기가 잘못된 정보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정보와 집회동기의 상관성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사회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자의 정치적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넘는 차원이다. 자신의 주장만이 항상 옳고 절대적인 선처럼 사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위 보도는 노인을 차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바라보며 보도해야 할 것이다.